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[H](채권-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 업데이트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(생략)	연혁 추가
제 2 부.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8.나.모투자 신탁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1) 투자 대상 (생략) (추가) (이하 생략)	1) 투자 대상 (현행과 같음) 주 1)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)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(추가)	증권대차 거래위험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

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	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수익률 변동성 <u>6.66%</u>	수익률 변동성 <u>7.82%</u>
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14.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1) ~ 3) (생략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생략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2%</u>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5%</u></p>	<p>1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현행과 같음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</p>

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(생략) 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[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]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한도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</p> <p>(생략)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(생략)</p>	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	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	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
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 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<u>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</u>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생략)</p> <p>- 종합 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<u>50</u>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 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--	--	--

		<p>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<u>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</u> <u>적용합니다.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</u> <u>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</u> <u>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</u> <u>공제합니다.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</u> <u>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</u> <u>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</u> <u>대해서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해당</u> <u>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 원</u>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 +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</u> <u>300 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</u> <u>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
제 3 부.1.가.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	<p>(주식 추가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주1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 주2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</p> <p>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</p> <p><주식의 매매회전율></p>
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

		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--	--	--	------------------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[UH](채권-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 업데이트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(생략)	연혁 추가
제 2 부.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8.나.모투자 신탁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1) 투자 대상 (생략) (추가) (이하 생략)	1) 투자 대상 (현행과 같음) 주 1)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)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(추가)	증권대차 거래위험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

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	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수익률 변동성 <u>7.23%</u>	수익률 변동성 <u>8.29%</u>
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14.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1) ~ 3) (생략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생략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2%</u>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5%</u></p>	<p>1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현행과 같음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</p>

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 원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</u> <u>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</u> <u>12%</u> (생략) 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<u>급용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 합계액이</u> <u>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</u> <u>[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</u> <u>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]</u>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<u>세액공제 12%</u>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<u>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</u> <u>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</u> <u>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</u> <u>15%</u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 원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</u> <u>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</u> <u>12%</u> 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한도: <u>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</u></p> <p>(생략)</p> <p>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(생략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	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분리과세한도: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
--	---	--
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<u>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</u>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생략)</p> <p>- 종합 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<u>50</u>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--	---	---

		<p>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<u>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</u> <u>적용합니다.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</u> <u>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</u> <u>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</u> <u>공제합니다.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</u> <u>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</u> <u>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</u> <u>대해서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해당</u> <u>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 원</u>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 +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</u> <u>300 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</u> <u>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
제 3 부.1.가.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	<p>(주식 추가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주1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 주2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</p> <p>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</p> <p><주식의 매매회전율></p>
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

		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--	--	--	------------------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[H](채권-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 업데이트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(생략)	연혁 추가
제 2 부.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8.나.모투자 신탁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1) 투자 대상 (생략) (추가) (이하 생략)	1) 투자 대상 (현행과 같음) 주 1)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)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(추가)	증권대차 거래위험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

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	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수익률 변동성 <u>8.80%</u>	수익률 변동성 <u>9.79%</u>
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14.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1) ~ 3) (생략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생략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2%</u>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5%</u></p>	<p>1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현행과 같음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</p>

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(생략) 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[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)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한도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</p> <p>(생략)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(생략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	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분리과세한도: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(현행과 같음)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
--	---	---
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 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<u>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</u>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생략)</p> <p>- 종합 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<u>50</u>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 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--	--	--

		<p>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<u>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</u> <u>적용합니다.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</u> <u>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</u> <u>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</u> <u>공제합니다.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</u> <u>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</u> <u>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</u> <u>대해서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해당</u> <u>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 원</u>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 +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</u> <u>300 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</u> <u>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
제 3 부.1.가.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	<p>(주식 추가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주1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 주2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</p> <p>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</p> <p><주식의 매매회전율></p>
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

		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--	--	--	------------------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[UH](채권-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 업데이트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(생략)	연혁 추가
제 2 부.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8.나.모투자 신탁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1) 투자 대상 (생략) (추가) (이하 생략)	1) 투자 대상 (현행과 같음) 주 1)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)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(추가)	증권대차 거래위험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

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	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수익률 변동성 <u>8.63%</u>	수익률 변동성 <u>9.62%</u>
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14.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1) ~ 3) (생략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생략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2%</u>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5%</u></p>	<p>1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현행과 같음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</p>

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 원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</u> <u>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</u> <u>12%</u> (생략) 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<u>급용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 합계액이</u> <u>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</u> <u>[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</u> <u>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]</u>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<u>세액공제 12%</u>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<u>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</u> <u>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</u> <u>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</u> <u>15%</u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 원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</u> <u>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</u> <u>12%</u> 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한도: <u>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</u></p> <p>(생략)</p> <p>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(생략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	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분리과세한도: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
--	---	--
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<u>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</u>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생략)</p> <p>- 종합 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<u>50</u>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--	---	---

		<p>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<u>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</u> <u>적용합니다.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</u> <u>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</u> <u>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</u> <u>공제합니다.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</u> <u>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</u> <u>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</u> <u>대해서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해당</u> <u>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 원</u>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 +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</u> <u>300 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</u> <u>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
제 3 부.1.가.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	<p>(주식 추가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주1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 주2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</p> <p>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</p> <p><주식의 매매회전율></p>
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

		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--	--	--	------------------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[USD](채권-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 업데이트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(생략)	연혁 추가
제 2 부.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8.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가. 투자 대상 (생략) (추가) (이하 생략)	가. 투자 대상 (현행과 같음) 주 1)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)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	(추가)	증권대차 거래위험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

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	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수익률 변동성 <u>8.68%</u>	수익률 변동성 <u>9.75%</u>
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14.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1) ~ 3) (생략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생략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2%</u>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5%</u></p>	<p>1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가입자</p> 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(현행과 같음) 세액공제: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</u> 만원 이내 세액공제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</p>

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(생략) 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[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)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한도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</p> <p>(생략)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(생략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	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연금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분리과세한도: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(현행과 같음)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: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</p>
--	---	---
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 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<u>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</u>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2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생략)</p> <p>- 종합 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<u>50</u>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P2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2e)가입자</p> 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</u>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</u>만원 중 적은 금액의 <u>13.2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<u>4 천 5 백만원</u> 이하 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<u>5 천 500</u>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<u>16.5%</u>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--	--	--

		<p>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<u>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</u> <u>적용합니다.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</u> <u>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</u> <u>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</u> <u>공제합니다.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</u> <u>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</u> <u>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</u> <u>대해서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해당</u> <u>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 원</u> <u>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u> <u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</u> <u>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</u> <u>금액 +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</u> <u>300 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</u> <u>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</u> <u>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
제 3 부.1.가.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	<p>(주식 추가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주1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 주2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(4기 0원, 3기 0원, 2기 0원)</p> <p>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</p> <p><주식의 매매회전율></p>
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

		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--	--	--	------------------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]

-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[H](채권-재간접형)
-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-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-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 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[연평균 수익률]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]

-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[UH](채권-재간접형)
-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-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-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 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[연평균 수익률]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]

-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[H](채권-재간접형)
-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-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-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 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[연평균 수익률]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]

-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[UH](채권-재간접형)
-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-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-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[연평균 수익률]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]

-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[USD](채권-재간접형)
-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-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-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0,000 달러(USD)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[연평균 수익률]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